第 4 章

1995年度 議會運營

第1節　第35回 臨時會
第2節　第36回 臨時會
第3節　第37回 臨時會
第4節　第38回 臨時會
第5節　第39回 臨時會
第6節　第40回 定期會

第 4 章　1995年度 議會運營

第1節　第35回 臨時會

1. 第1次 本會議

가. 의장단 선거

○ 의장 선거

1995년 7월 11일 오전 10시 제2대 청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원구성을 위한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였다.　등록을 마친 10명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연장 의원인 김인환 의원의 사회(의장 직무대행)로 제2대 청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선거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강희재의원 6표, 조병안의원 3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산면 출신 강희재 의원이 제2대 청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임기 1년 반동안의 의정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 부의장 선거

이어서 실시된 부의장 선거는 전반기의장으로 당선된 강희재 의장의 사회로 의장선출시와 같은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김인환의원 6표, 윤명희의원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비봉면 출신 김인환의원이 제2대 청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성종의원, 김영주의원이 선출되었다.

다. 개 원 식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의회사무과장(김의환)의 사회로 진행된 개원행사는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의 뜨거운 성원과 참석아래 검소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 의원선서 - 의장 개회사 - 군수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원들은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결연한 각오로 선서하였다.

한편 강희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경건한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군민의 입과 귀가되어 진솔하게 말하고 군민의 세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민의 발이 되어 열심히 뛸 것을 군민여러분께 약속을 하였다.

2. 第2次 本會議

가. 제35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35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3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5. 7. 11(수) 10:00	1	1. 의장, 부의장선거 (개 원 식)	
7. 12(목)	2	1. 제35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에관한보고 3.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6.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나. 군정에관한보고

제2대 청양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별도 일정을 정하여 군수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군정보고를 받기로 보류하였다.

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7. 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와 급증하는 지적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인력의 보강과 지방직 공무원 부군수 정원이 국가직화 됨에 따라 지방직 정원을 감원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7월 1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9명”을 “20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군 본청 정원중 1인의 감원정원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7. 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완벽한 지적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 보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7월 1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삽입한다.
제7조중 제10호내지 제15호를 삭제하고 제16호를 제10호로 한다.
제7조 다음에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2. 지적민원 처리
3.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4. 지적공부 보존관리
5.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6.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
7.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8.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9.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
10. 이동지 검사 및 정리
11.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관한 업무
12.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1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14. 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15. 토지거래 허가·신고 업무

16.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17. 부동산중개업 허가처리 및 지도단속 업무

18. 그 밖의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7. 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을 위한 효율적인 보좌기능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를 두기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7월 1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호내지 제11호를 제2호내지 제3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7. 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7월 1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비”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으로 한다.

제1조 본문중 “일비와”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지급) ①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청양군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한다.

② 회의수당은 회기중 청양군의회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 제3항중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를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350,000원으로 한다.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

제9조중 “일비와”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節　第36回 臨時會

제36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조병안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5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었다.

1. 第1次 本會議

가. 제3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36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3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5. 7. 25(화) 10:00	1	개　　회　　식 1. 제3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 3. 군정에관한보고	
7. 26(수)	2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7. 27(목)	3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7. 28(금)	4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나. 군정연설

1995년도의 군정에 관한 보고에 앞서 군수로부터 군정연설이 있었다.

다. 군정에관한보고

1995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이 보고되었다.

2. 第2次 本會議

가.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사회진흥과, 사회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3. 第3次 本會議

가.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건설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민방위 소관이 보고되었다.

4. 第4次 本會議

가.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었으며 농촌지도소, 산업과 소관이 보고되어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쳤다.

나.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 주요골자

・선임위원수 : 3인

・선임방법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지방자치법 제56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명단(선임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청 양 군 의 회	군 의 원	조 병 안	
청양농지개량조합	정산출장소장	윤 성 진	
청양읍 읍내리 39	・	김 성 규	전직 공무원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결산검사위원에 조병안의원, 농지개량조합 윤성진, 전직공무원 김성규씨 등 이상 3명이 선임되었다.

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복상교의원, 김용성의원이 선출되었다.

第3節　第37回 臨時會

제37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김현백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5년 8월 7일 오후 1시 02분에 개회되었다.

1. 第1次 本會議

가. 제37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37회 임시회의 회기는 8월 7일, 1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3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5. 8. 7(월) 13:00	1	개　　회　　식	
		1. 제37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3. 하천골재채취군간접직영사업추진에대한 건의안	

나.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 추천하기 위함.

○ 주요골자

・교육위원후보자 추천기준

- 2인으로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

・교육위원후보자 등록상황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경 력	비 고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193	정 영 철	1929. 11. 8.	46년 6월	경력자

○ 처리결과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여 총 투표수 10표중에서 찬성 10표로서 정영철 후보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어 1995년 8월 7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추천하였다.

다. 하천골재채취군간접직영사업지속추진에대한건의안

○ 제안년월일 : 1995. 8. 7. ○ 제안자 : 조병안의원외 7인

○ 제안이유

청양군은 충남에서도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19.6%의 재정자립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 반하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하천골재채취 군간접 직영사업을 백제권 개발사업소로 이관해야 할 긴박한 실정에 놓여있으므로 청양군의 유일한 부존자원이며, 세외수입원인 골재채취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관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 의 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서 영예의 민선 지사에 당선되신 심대평 지사님께 축하를 드리며,

힘차게 출범하는 도정의 무궁한 발전과 지사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건승하심을 축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인 지난 6월에 확정되어 금년 10월부터 추진예정인 충청남도의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5만 청양군민의 이름을 빌어 절대 결사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함께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사업계획을 재검토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강종합개발계획은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가 관리 관장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국비를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충청남도에서 서둘러 시행을 대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서,

2. 종합개발계획은 자치시대 관련 시·군의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중앙통제적 행정의 발상에 의거 금강의 광역개발의 미명아래 사업이 용이하고, 재원확보의 쉬운점을 이용하여 건설교통부 사업을 위임받아 전시적인 지역개발의 명분을 찾을려는데 불과하며,

3.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해당 시·군(5개 시·군)의 자치재원 수입으로 상당기간 보장받아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자치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는 이점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지역 재원화하는데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특히 청양군의 경우, 도내 최하위 재정자립도의 열악한 여건하에서 자치경영재원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1년부터 금강골재채취사업으로 약 64억의 군수입을 올렸으나, 그동안 골재채취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등에 13억 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실질적으로 내년 이후에나 군수입 효과가 높아질 즈음에서 골재채취권을 회수해간다는 것은 청양군 재정과 자립의지를 꺾고 숨통을 조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5. 그동안 골재채취기반시설 및 사업운영에 있어서 많은 군민의 민원이 있었으나, 군의 유일한 수입원이라는데 양해를 구하면서 군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운영하였으나, 도주관사업이 될 경우 진입로 사용등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민원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어 지역적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조짐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천골재채취 군간접 직영사업의 이관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뿐더러 관련 시·군의 재정 기여도 등이 숙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급한 금강개발의 명분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자치경쟁시대의 지역재정확충이 절박한 현실이므로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하천골재채취 군 간접 직영사업의 이관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결의하면서, 도지사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1995. 8. 7.

청 양 군 의 회 의 원 일 동

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백의원, 윤명희의원이 선출되었다.

第4節 第38回 臨時會

제38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김용성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5년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었다.

1. 第1次 本會議

가. 제38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38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3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5.10.12(목) 10:00	1	개 회 식 1. 제38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장답사계획의건 3. 휴회의건	
10. 13~10. 17		휴 회 (5일간)	주요사업장 답사 활동
10. 18(수)	2	1. 청양군주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제정에관한 청원 2. 군정에관한질문	

나. 주요사업장답사계획의건

1995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군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촉구하며, 군민의 여론수렴등 의정활동자료의 수집으로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군내 47개 사업장을 의원 전원이 답사키로 의결하였다.

다. 휴회의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휴회키로 가결하였다.

2. 第2次 本會議

가. 청양군주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제정에관한청원

○ 제출년월일 : 1995. 8. 23. ○ 소개의원 : 윤명희의원

○ 청 원 자 :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정낙기

○ 청원요지

청양군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많은 주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사무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무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청양군주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망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현행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불편처리제도를 활용하면 청양군주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청원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를 1995년 10월 18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군정에관한질문

군정에 관하여 김현백 의원외 6인이 질문하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비 고
김 현 백	1. 청양읍 송방교 남쪽 약 150m 지점에 설치된 암거형 洑를 개폐식으로 설치함이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추진할 용의는?	건 설 과
	2. 송방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대토된 토지현황과 사후대책은?	”
윤 명 희	1. 칠갑문화제의 금년예산 및 결산내용과 후원단체별 지원금·품내용, 문화원 이사진의 찬조 및 활동내역, 행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문화공보실
	2. 군에서 배부되는 각종 신문의 배부대상자별 현황은?	”
	3. 군산하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를 제외하고 남은 부지의 지구별 현황은?	지역경제과
	4. ’95년 6월 30일 전 군수의 칠갑주조(주) 목면 현지공장 건축에 각종 행정편의 및 환경영향평가 편의제공의 급행내용이 있었는가?	”
	5.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구기자 엑기스 특허권을 어떠한 경우로 비봉농협에 주었으며 군의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산 업 과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비 고
김 용 성	1. 칠갑산 도립공원개발 추진상황과 부분적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안등 앞으로의 계획 및 편익시설물의 관리대책은?	건 설 과
	2. 생활호대상자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학자금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시기지연등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사 회 과
	3. 까치내등 유원지의 행락객 급증과 함께 쓰레기가 폭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그 대책과 입장료등 징수계획은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요망.	환경보호과 건 설 과
복 상 교	1. 금년도의 농촌주방개량 및 화장실 개량사업 보조금 지급시기와 지연이유는?	도 시 과
	2. '95 공설공원묘지조성 및 공설납골당설치계획의 추진실적은?	가정복지과
	3. 목면 대평리에 조성계획인 문화마을의 '95. 7. 7 이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건 설 과
김 영 주	1. 지난번의 수해로 인한 화산양수장보수 및 하상유실로 인한 보설치요구 건의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요망,	〃
	2. 고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 특히 낙지·적곡구간 도로포장이후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위험표지판등 안전대책시설 용의는?	지역경제과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비 고
유 성 종	1. 충남일원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 392㎢가 본군이 해당되는데 안전사고대책 및 야간수렵행위에 대한 사고예방 및 홍보대책은 무엇인가?	산 림 과
	2. 본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바 본의원이 자료받기전에 이미 제3자에게 유출된 경위는?	기 획 실
조 병 안	1. 민선군수 이후 군정의 변화된 내용과 금후계획은?	내 무 과
	2. 군행정조직개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
	3. 민선군수의 선거공약은 무엇무엇이며, 이의 이행계획 및 실적은?	기 획 실
	4. ’95년도 산하공무원의 해외연수계획 및 실적(인원 및 예산액과 지출액)과 개인별 행선지, 기간, 목적, 비용, 연수비, 개인별 연수보고서, 이를 군정수행에 활용할 계획 및 실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내 무 과
	5. 칠갑산 휴게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용 및 준공결과와 현상황은?	산 림 과

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안의원, 유성종의원이 선출되었다.

第5節　第39回 臨時會

제39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유성종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5년 11월 10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었다.

1. 第1次 本會議

가. 제3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39회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3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5.11.10(금) 11:00	1	개　　회　　식 1. 제3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4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의건	
11. 11~11. 15		휴　　회　(5일간)	예결특위 운　영
11. 16(목)	2	1. 부의장 보궐선거	
11. 17(금)	3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4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나.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제출년월일 : 1995. 11. 10.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골재채취전입금수입, 공공잉여자금에대한 이자수입과 가을착수경지정리 및 정산 상수도사업비가 추가내시되었고, 지천도로 확·포장사업비가 특별교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함.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	2회추경예산액	증 감	비 고
계	63,105,312	86,109,433	23,004,121	
일반회계	51,872,546	72,928,522	21,055,976	
특별회계	11,232,766	13,180,911	1,948,14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995년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다. 1994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 제출년월일 : 1995. 11. 10.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고자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1995.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4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 8인을 선임하였다.

◈ 선 임 위 원 명 단 ◈

김현백의원, 윤명희의원, 김용성의원, 복상교의원
윤재순의원, 김영주의원, 유성종의원, 조병안의원

마. 의사일정변경의건

1995년도 정기회를 대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다.

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5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 8인을 선임하였다.

◈ 선 임 위 원 명 단 ◈

김현백의원, 윤명희의원, 김용성의원, 복상교의원
윤재순의원, 김영주의원, 유성종의원, 조병안의원

사. 휴회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휴회키로 하였다.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행인 조병안위원의 진행으로 윤재순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선임에 이어 간사에는 윤명희위원이 추천 선임되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였다.

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4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질의·토론이 있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이에따른 질의·토론이 있었다.

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3차 예결특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다.

마.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4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제2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94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키로 하였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심사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키로 하였으며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

◇ 예산총칙수정안

집행기관 제출 예산안	수 정 예 산 안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2,549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8,325천원으로 한다.

◇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 총 괄

< 세 입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86,109,433	-	-	86,109,433	-
일반회계	72,928,522	-	-	72,928,522	-
특별회계	13,180,911	-	-	13,180,911	-

< 세 출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86,109,433	128,776	128,776	86,109,433	0.15
일반회계	72,928,522	128,776	128,776	72,928,522	0.1
특별회계	13,180,911	-	-	13,180,911	0.2

○ 삭감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장		단체장제출	수 정 액		수 정 후	수정이유와
관	항	예 산 액	감 액	증 액	예 산 액	내 역
계		72,928,522	128,776	128,776	72,928,522	
일 반 행 정 비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802,433	53,000	53,000	802,433	
			(53,000)			토지매입비
				(53,000)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입금 적립
사 회 복 지 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2,522,752	75,776		2,446,976	
			(75,776)			노인교통비
지원 및 기타경비						
예 비 비	예 비 비	412,549		75,776	488,325	
				(75,776)		

3.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가.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행인 조병안위원의 진행으로 윤명희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선임에 이어 간사에는 김영주위원이 추천 선임되었다.

4. 第2次 本會議

가. 부의장 보궐선거

전임 김인환 부의장이 '95년 8월 17일자로 사직 허가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보궐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5표중에서 유성종의원 5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남양면출신 유성종의원이 제2대 청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5. 第3次 本會議

가. 1994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 예결특위 회부일 : 1995. 11. 10.　　○ 심사보고일 : 1995. 11. 17.

○ 처리결과

1994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윤재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1월 1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

(단위:천원)

구분 / 회계별	예산현액	결산		
		세입	세출	이월액
합계	73,618,295	71,050,595	55,042,379	16,008,216
일반회계	59,116,914	57,880,668	46,936,728	10,943,940
특별회계	14,501,381	13,169,927	8,105,651	5,064,276
계	14,501,381	13,169,927	8,105,651	5,064,27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49,084	4,388,321	1,459,624	2,928,697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4,098	22,876	1,841	21,035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1,314,132	1,313,892	1,231,118	82,774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50,556	266,771	207,000	59,771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3,764	26,125	20,416	5,709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92,318	92,713	0	92,713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834,458	2,676,570	1,627,304	1,049,266
골재채취특별회계	4,202,855	3,974,455	3,534,170	440,285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76,616	376,623	0	376,62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3,500	31,581	24,178	7,403

나.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예결특위 회부일 : 1995. 11. 10.　　○ 심사보고일 : 1995. 11. 17.

○ 처리결과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재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1월 1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재순의원, 김용성의원이 선출되었다.

第6節　第40回 定期會

제40회 청양군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다.

1. 第1次 本會議

가. 제40회청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제40회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40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 ◈

월 일	구 분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25(토) 10:00	본 회 의	1	개 회 식	
			1. 제40회청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감사특위	1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 26(일)			공 휴 일	일 요 일
11. 27(월)	본 회 의	2	1. '95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각 실·과 직속기관별 보고
11. 28(화)	”	3	1. '95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

월 일	구 분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 29(수)	본 회 의	4	1. '95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2. 휴회의건	 11.30~12.6
11. 30(목)	감사특위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군수인사
12. 1(금)	"	3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2. 2(토)	"	4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2. 3(일)			공 휴 일	일 요 일
12. 4(월)	감사특위	5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2. 5(화)	"	6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2. 6(수)	"	7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2. 7(목)	본 회 의	5	1. 1996년도예산안 - 199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조례안및일반안건 4. 휴회의건	 군 수 12.8~12.19
	예결특위	1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
12. 8(금)	"	2	1. 1996년도예산안	
12. 9(토)	"	3	1. 1996년도예산안	
12. 10(일)			공 휴 일	일 요 일
12. 11(월)	예결특위	4	1. 1996년도예산안	
12. 12(화)	"	5	1. 1996년도예산안	
12. 13(수)	"	6	1. 1996년도예산안	

월 일	구 분	차수	부 의 (심사) 안 건	비 고
12. 14(목)	예결특위	7	1. 1996년도예산안	
12. 15(금)	”	8	1. 1996년도예산안	
12. 16(토)	”	9	1. 1996년도예산안	
12. 17(일)			공 휴 일	일 요 일
12. 18(월)	예결특위	10	1. 1996년도예산안	
12. 19(화)	”	11	1. 1996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	
12. 20(수)	본 회 의	6	1. 1996년도예산안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조례안및일반안건 5. 휴회의건	12.21~12.26
12. 21(목)	예결특위	12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22(금)	”	13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23(토)	”	14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24(일)			공 휴 일	일 요 일
12. 25(월)			공 휴 일	성 탄 절
12. 26(화)	예결특위	15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27(수)	본 회 의	7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건	12. 28

월 일	구 분	차수	부 의 (심사) 안 건	비 고
12. 28(목)	감사특위	8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12. 29(금)	본 회 의	8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조례안및일반안건	

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키로 하였다.

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감사특위에서 채택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 20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다.

라.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증언을 위하여 감사특위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 실·과장, 사업소장, 각 계장을 출석요구하였다.

2.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가.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감사특위 심사결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였다.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5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감사기간

1995년 11월 30일 ~ 12월 6일(7일간)

◇ 감사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군본청(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좌 동

◇ 감사반 편성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간 사	감사위원	보 조 직 원
· 청양군 (실 · 과) · 사업소 · 보건의료원 · 농촌지도소 · 읍 · 면	윤 명 희	김 영 주	김 현 백 김 용 성 복 상 교 윤 재 순 유 성 종 조 병 안	- 사무과장 : 김의환 - 전문위원 : 강우형 - 의사계장 : 정관영 - 의 사 계 : 이용만 정창용 - 속 기 사 : 2명

※ 감사반은 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 전원으로 함.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995. 11. 30(목) 10:00	기획실, 문화공보실, 모덕사관리사무소, 내무과	특별위원회실
1995. 12. 1(금) 10:00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
1995. 12. 2(토) 10:00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
1995. 12. 4(월) 10:00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
1995. 12. 5(화) 10:00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
1995. 12. 6(수) 10:00	읍 · 면 현지확인	”

◇ 감 사 요 령

대 상 기 관	감 사 방 법	중요감사사항	비 고
· 군 청 (실 · 과) · 사업소 · 보건의료원 · 농촌지도소 · 읍 · 면	- 감사자료 보고 청취 - 자료분석과 질의 - 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 현지확인검증	감사자료요구 사항 (별첨)	- 관계인 출석 요구 -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및 실과, 사업소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관계공무원과 필요시 일반주민)

◇ 소요경비

없음

◇ 기타 필요한 사항

ㅇ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등은 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의장경유 피감사기관에 요구

ㅇ감사과정에서 증거에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받음

ㅇ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

ㅇ감사자료요구

- 제출기한 : 1995. 11. 29.
- 작성기준 : 1995. 1. 1~ 현재(시정요구 불이행사항 포함)
- 규 격 : A4 상철(부득이한 경우 좌철)
- 제출부수 : 15부

- 제출서식 : 임의서식(단 현황을 쉽게 알수있도록 사항별로 구체적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 첨부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사본 별첨)

ㅇ첨　　부 : 감사자료요구사항(생략)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증언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실·과, 직속기관의 장과 전 계장을 출석요구키로 하였다.

3. 第2次 本會議

가. 1995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는 실·과, 직속기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다.

4. 第3次 本會議

가. 1995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제2차에 이어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의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이 있었다.

5. 第4次 本會議

가. 1995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제3차에 이어 민방위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1995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쳤다.

나. 휴회의건

행정사무감사실시 관계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하였다.

6.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가.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2월 6일까지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하고 기획실, 문화공보실, 모덕사관리사무소,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마.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제5차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바.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제6차에 이어 계속해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7. 第5次 本會議

가. 1996년도예산안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정원영 청양군수의 군정연설이 있었다.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1996년도 예산안을 회부하고 12월 20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였다.

◈ 선 임 위 원 명 단 ◈

김현백 의원, 윤명희 의원, 김용성 의원
복상교 의원, 윤재순 의원, 김영주 의원
유성종 의원, 조병안 의원, 박효신 의원

다. 휴회의건

19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키로 하였다.

8.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조병안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선임에 이어 간사에는 김용성위원이 추천 선임되었다.

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예산안

○ 제출년월일 : 1995. 11. 21. ○ 제출자 : 청양군수

○ 예결특위 회부일 : 1995. 12. 7.

○ 심의내용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예산안(계속)

제2차에 이어 1996년도 예산안의 심사가 계속되었다.

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예산안(계속)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1996년도 예산안의 심사가 계속되었다.

마.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예산안(계속)

제4차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진행되었다.

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예산안(계속)

제5차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진행되었다.

사.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예산안(계속)

제6차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진행되었다.

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예산안(계속)

제7차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진행되었다.

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기획실장의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차.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계속)

제9차에 이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진행되었다.

카.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6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제10차 예결특위까지 심사한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키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

◇ 예산총칙수정안

집행기관 제출 예산안	수 정 예 산 안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1,316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74,944천원으로 한다.

◇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 총 괄

< 세 입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78,958,555	-	-	78,958,555	-
일반회계	66,869,007	-	-	66,869,007	-
특별회계	12,089,548	-	-	12,089,548	-

< 세 출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78,958,555	809,401	809,401	78,958,555	1
일반회계	66,869,007	803,628	803,628	66,869,007	1.2
특별회계	12,089,548	5,773	5,773	12,089,548	0.04

○ 세입예산안(총괄)

(단위:천원)

구 분	단체장제출 예 산 액	수 정 액		수정 후 예산액
		감 액	증 액	
계	78,958,555			78,958,555
일 반 회 계	66,869,007			66,869,007
지 방 세	4,137,089			4,137,089
세 외 수 입	6,130,234			6,130,234
경상적세외수입	1,816,769			1,816,769
임시적세외수입	4,313,465			4,313,465
지 방 교 부 세	25,636,000			25,636,000
지 방 양 여 금	6,454,787			6,454,787
보 조 금	22,510,897			22,510,897
국 고 보 조 금	13,312,383			13,312,383
도 비 보 조 금	9,198,514			9,198,514
지 방 재 원	2,000,000			2,000,000
특 별 회 계	12,089,548			12,089,548
지 방 세				
세 외 수 입	8,776,561			8,776,561
경상적세외수입	6,287,357			6,287,357
임시적세외수입	2,489,204			2,489,204
지 방 교 부 세				
보 조 금	3,312,987			3,312,987
국 고 보 조 금	2,892,362			2,892,362
도 비 보 조 금	420,625			420,625
지 방 재 원				

○ 세출예산안(총괄)

(단위:천원)

장별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예산액
		감액	증액	
계	78,958,555	809,401	809,401	78,958,555
일반회계	66,869,007	803,628	803,628	66,869,007
일반행정비	19,829,621	484,690		19,344,931
사회개발비	14,796,965	97,750		14,699,215
경제개발비	29,847,191	221,188		29,626,003
민방위비	346,200			346,200
지원및기타경비	2,049,030		803,628	2,852,658
특별회계	12,089,548	5,773	5,773	12,089,54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4,428			394,428
주택사업특별회계	19,724			19,724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1,515,337			1,515,337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223,791			223,791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9,598			169,598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5,544,842			5,544,842
골재채취특별회계	2,928,001	5,773	5,773	2,928,001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1,256,313			1,256,31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7,514			37,514

○ 삭감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장		단체장제출	수 정 액		수 정 후	수정이유와
관	항	예 산 액	감 액	증 액	예 산 액	내 역
일 반 행 정 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8,624,017	92,000		8,532,017	
			(12,000)			군정수행 특수활동비 (부)
			(53,000)			민간경상 보조(pool)
			(27,000)			충 남 발 전 연 구원출연금
	공보관리	134,085	28,040		106,045	
			(8,040)			홍보용신문 구독
			(20,000)			기획홍보비
	내무행정	2,878,844	29,000		2,849,844	
			(13,000)			군정수행 업무추진비
			(10,000)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6,000)			향토식품 개발지원
	재무행정	1,088,125	335,650		752,655	
			(30,000)			노후차량 대폐차승용 (대형)

장		단체장제출	수 정 액		수 정 후	수정이유와
관	항	예 산 액	감 액	증 액	예 산 액	내 역
			(11,970)			실시설계비
			(285,000)			시설비
			(1,526)			시설부대비
			(7,154)			감리비
사 회 개 발 비						
교육및문화	문화예술	776,809	10,000		766,809	
			(10,000)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사업
	체육진흥 관 리	659,635	74,500		585,135	
			(4,500)			청소년어울 마당운영
			(20,000)			직장복싱팀 육성
			(2,170)			공설운동장 실시설계비
			(47,470)			공설운동장 조성시설비
			(360)			공설운동장 조성부대비
보건및생활 환경 개선	보건관리	2,862,332	2,000		2,860,332	
			(2,000)			원장실 응접셋트

장		단체장제출	수 정 액		수 정 후	수정이유와
관	항	예 산 액	감 액	증 액	예 산 액	내 역
	환경관리	2,997,153	5,000		2,992,153	
			(5,000)			환경백서 제작
사회보장	가정복지	1,779,218	6,250		1,772,968	
			(6,250)			노인의집 운영
경 제 개 발 비			(4,500)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17,786,772	150,000		17,636,772	
			(150,000)			농민회관 신축
	농촌진흥	1,301,579	10,000		1,291,579	
			(10,000)			생활개선 기금조성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자원 개 발	1,508,704	26,188		1,482,516	
			(500)			휴양림 입장권제작
			(300)			시설사용권 제작
			(4,488)			산불감시원 인부임
			(8,900)			시가지간선 도로가로수 보식

장		단체장제출	수 정 액		수 정 후	수정이유와
관	항	예 산 액	감 액	증 액	예 산 액	내 역
			(6,000)			지천변가로수꽃길조성 철쭉
			(6,000)			연산홍
	건설관리	7,642,895	35,000		7,607,895	
			(35,000)			기타직보수

・특별회계(세출)

(단위:천원)

장		단체장제출	수 정 액		수 정 후	수정이유와
관	항	예 산 액	감 액	증 액	예 산 액	내 역
골재채취특별회계						
관 리 비	관 리 비	20,794	5,773	5,773	20,794	
			(5,773)			재료비
				(1,473)		일반수용비
				(4,300)		관서당경비

9. 第6次 本會議

가. 1996년도예산안

○ 예결특위 회부일 : 1995. 12. 7.　　○ 심사보고일 : 1995. 12. 20

○ 처리결과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조병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나.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11. 23.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사업추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청양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11. 23.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운영관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토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①기금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중 조제목 “계리상황의 보고 및 결산”을 “세입·세출의 결산의 작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계리상황”을 “세입·세출상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구기자술제조공장민관공동투자승인의건

○ 제출연월일 : 1995. 11. 23.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본군의 주요특산물인 구기자의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로 소비처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바, '93년 군에서 특허등록한 구기자술을 제조하여 안정적인 구기자 소비를 촉진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자주재원 창출을 위한 구기자술 제조공장을 민관공동투자로 설립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며 1995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다.

마.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11. 23.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하며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단서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1호중 “기타 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기타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제2호중 “부군수·실·과장 관사”를 “부군수 관사”로 한다.

제56조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12. 16.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군세업무수행 및 조례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사.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12. 16.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세의 감면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세감면조례를 현실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5년간”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제1항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영 업 용	비업무용
2,000씨씨이하	10원	160원
2,500씨씨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이하	12원	200원
3,500씨씨초과	15원	23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 청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11. 23.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제3항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처분통지등) 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군수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지가로 산정한다.

제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 청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11. 23.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에 광고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광고위치와 광고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독촉장 발부시 기납부한 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후면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광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전·후면중 여백에 광고문을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는 별표 9의1과 같다”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군수는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공인을 날인하여 제작한 후 수요를 판단 발행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제작사양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29조제1항중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표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1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5-2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중 “7일이내”를 “45일이내”로 한다.

〔별표9의1〕 규격봉투 광고료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0〕 과태료부과기준표중 폐기물관리법의 제1호 가목란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에 대한 각각의 부과금액 “25천원”을 “30천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11. 23.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과태료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시 납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기납부 환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1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를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로 하며 “7일이내”를 “45일이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11. 23.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청양상수도의 요금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업종별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3호〕 업종별구분표중 공공용 제3호중 “원호단체”를 삭제하여 이를 가정용 제3호중 “마을회관” 다음에 삽입하고, “영업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하고,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의 정례검침분까지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0. 第7次 本會議

가.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제출연월일 : 1995. 11. 28.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기 위함

○ '94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천원)

지출일시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액	비 고
계				2건	8,813	
'94. 3. 24	5110 도시계획 관리	5112 도시개발 관리	5112-1 도시시설 계획	302-01 배상금	6,450	청양읍 도시기반 사업 편입용지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임의변제 및 소송비
'94. 12. 30	4120 축수산 진흥	4121 축산행정	4121-1 축산행정	411-01 민간자본 보조	2,363	폭염 가축피해 복구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

심사를 위하여 1995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 토록 하였다.

나.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연월일 : 1995. 12. 21.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과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	제3회추경예산액	증 감
계	86,109,433	89,511,272	3,401,839
일 반 회 계	72,928,522	76,538,028	3,609,506
특 별 회 계	13,180,911	12,973,244	△207,66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995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다. 휴회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하였다.

11.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가.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이 있었다.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나.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12차 예결특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이에 따른 질의·토론이 있었다.

다.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13차 예결특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다.

라.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12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키로 하였다.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5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심사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키로 하였으며,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

◇ 예산총칙수정안

집행기관 제출 예산안	수 정 예 산 안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6,098천원으로 한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1,098천원으로 한다.

◇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총 괄

< 세 입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89,511,272	-	-	89,511,272	-
일반회계	76,538,028	-	-	76,538,028	-
특별회계	12,973,244	-	-	12,973,244	-

< 세 출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89,511,272	15,000	15,000	89,511,272	0.02
일반회계	76,538,028	15,000	15,000	76,538,028	0.02
특별회계	12,973,244	-	-	12,973,244	-

○ 삭감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장		단체장제출	수 정 액		수 정 후	수정이유와
관	항	예 산 액	감 액	증 액	예 산 액	내 역
일 반 행 정 비						
공 보 비	공보관리	181,160	15,000		166,160	
			(15,000)			군정보도 특집수수료
지원및기타경비						
예 비 비	예 비 비	636,098		15,000	651,098	

12. 第8次 本會議

가.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예결특위 회부일 : 1995. 12. 21. ○ 심사보고일 : 1995. 12. 27.

○ 처리결과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조병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8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나.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예결특위 회부일 : 1995. 12. 21. ○ 심사보고일 : 1995. 12. 27.

○ 처리결과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병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27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다. 휴회의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995년 12월 28일 1일간 휴회키로 하였다.

13.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가.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9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였으며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기 획 실	ㅇ지역정보화센타가 우리지역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	ㅇ아직까지 이용주민이 기술면이나 활용이 미흡한 상태로 앞으로 기술습득 및 활용등 홍보토록 하겠음.
	ㅇ임업협동조합은 자립기반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보조금 지원 실태	ㅇ국비사업의 보조금 부담 형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기 획 실	○정산, 화성농공단지의 투자비 손익계산 상황	○아직 미입주업체가 있어 어려움이 있음.
	○자료제출에 따른 저가용지 사용등 예산절감계획	○96년도부터 자체발간실 운영으로 인쇄에 따른 예산을 대폭 절약할 계획임.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을 위하여 청양군 각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함.
	○명시이월사업에 있어 전년도 대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바 그 원인	○사업추진에 있어 절대공기의 부족, 정리추경 반영등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이월되고 있음.
문화공보실	○청양신문의 각 읍·면별 배부대상자의 조정 의향	○각 읍면별로 배부대상자를 재검토하고 형평성있는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특집홍보비 및 특화작목 홍보비 지급기준	○정해져 있는 지급기준은 없으며, 각 사별로 1회씩 홍보에 소요된 예산이며 앞으로 특집홍보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문화공보실	○문화재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내용	○문화재의 정비는 문화재관리 전문위원의 감정을 거쳐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추진되고 있음.
	○군정소식지의 배부에 있어 배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음	○배부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철저히 배부되도록 하겠음.
	○청양홍보집 제작에 있어 타시·군에 비하여 질이 떨어지고 있음	○제반여건상 열악한 형편이나 앞으로 시정개선토록 하겠음.
내 무 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일용인부의 감축계획	○일용인부의 감축계획은 별도 수립하지 못했으며, 자연감축시 조정토록 할 계획임.
	○일선 읍·면공무원의 군, 읍·면간 교류현황	○'95년도 군에서 읍·면으로 15명,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한 인원은 19명임.
	○읍·면직원의 미연고지 배치에 의한 근무의욕 저하에 대한 대책	○한자리에 장기근무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며, 가능한한 연고지 배치코자 노력하고 있음.
	○'93년도이후 농업직 공무원의 행정직 전직 실적	○'93년도 이후 농업직 공무원의 행정직 전직실적은 없음. 상부의 지시에 의거 세무직등 타직종 전직은 실시되고 있음.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내 무 과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감사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이나 타군 공무원등으로 발령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무원은 맡은바 직분에 따라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감사 소홀시에는 감사공무원 자신이 문책을 받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봄.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10건의 자체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233만 4천원을 회수조치하였으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 조치함.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의견사항과 타군에 비하여 인구수대 공무원수의 비율이 너무 높은 편임. 조직개편내용	○주민의견 수렴사항은 없고 기구축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음. 시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별도 보고하겠음.
	○공무원의 해외연수결과 우리군에 기여한 내용	○'95년도에 45명이 해외연수를 하였으며, 연수결과보고서 모음집 발간, 관련 실과별 연찬회 개최등으로 군정수행에 활용할 계획임.
	○생활민원사업 처리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로 읍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대책	○사업추진에 따른 적정성등 판단을 위하여 확인 및 심사과정을 거치므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적정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임.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사회진흥과	○향후 문화체육센타의 주차난이 예상되는바 해소대책	○인근 하천복개지 주차장 등을 활용토록 할 계획임.
	○새마을문고 운영상황	○군내 3개소를 설치하여 부락도서관, 독서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호응도가 높고 잘 운영되고 있음.
	○지천 수상공원의 수해에 따른 금후계획	○수해복구비 6,900여만원을 투자하여 미끄럼틀등 시설물을 복구할 계획임.
	○청소년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등이 필요한바 앞으로 계획	○문화체육센타를 활용한 휴식공간, 영화상영, 무대 등을 갖출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공설운동장이 아직까지 준공 검사되지 않은 이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별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으며, 운동장에 대한 준공검사를 충청남도에 신청하였으며, '96. 6. 30일 까지는 국유임야의 무상임대기간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음.
	○백천 하상정리사업의 목적과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차장 설치이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하상을 정리하여 깨끗이 하고 공설운동장 사용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재 무 과	○'95년도 주민세 징수목표액 대비 조정액에 있어 1억원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	○당초 '94년보다 상향조정하여 책정하였으나 양도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가 예상보다 많이 징수되었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독려절차	○읍·면 분담직원을 통한 방문독려와 독촉장 발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비치, 재산압류조치등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5,000만원이상 시행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경위	○토공사업등 기사업이 시행된 동일사업장에 대한 추가사업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임.
	○각종 공사에 있어 예정가대 낙찰가 비율이 85%, 88%로 같은 원인	○'95. 7월 이전에는 예정가액의 85%에 가까운 입찰자에 낙찰되었고, 9월 30일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88%에 가까운 입찰자에게 낙찰되고 있기 때문임.
	○행정재산 임대계약 목적외 사용에 대한 조치계획	○계약사항 위배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겠음.
지 적 과	○지적민원처리에 있어 297건의 지목변경사항 및 내용	○관계부서와 협의 누락없이 처리하겠으며 내용을 서면제출토록 하겠음.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지 적 과	○연도별 군 면적 증감에서 임야면적이 증가하는 이유	○초지조성등 목장용지등이 임야로 환원되어 증가하였음.
	○지목변경사항에 대한 과세조치 여부	○지목변경시 관계부서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있음.
	○지적공부정리에 있어 '95년도 계획인 청양읍, 남양면외 타면에 대한 정리계획	○면별 년차별 정리계획에 의하여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임.
사 회 과	○생수의 무허가 제품판매에 따른 조치 사항	○무허가 제품을 수집, 폐기하고 1차 경고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음.
	○임가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추진내용	○군내 24개 업체에 대하여 각 관련단체의 도지부에서 자율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음.
	○의료보호 진료기관별 진료비가 타지역에 비해 관내 병·의원의 경우 삭감액이 많은 이유	○병·의원의 행정착오에 의한 삭감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음.
	○의료보험료가 농촌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임. 상부기관에 건의 등을 통해서 농촌실정에 맞는 보험료 부과 의향	○앞으로 건의등 검토하겠음.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도 시 과	○도시계획재정비 지역입안 결정시 주민여론 수렴여부	○주민공람절차가 있으므로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각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겠음.
	○청양 상수도시설에 있어 도시계획면적, 하수종말처리장 등 연계성 여부	○향후 2011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상수도운영에 따른 자생능력 여부	○상수도조례개정으로 12%인상이 될시 상수도의 운영까지는 할수있을 것으로 봄.
	○화장실 개량에 있어 수혜자에게 이중지원되고 있지 여부	○현재까지는 약 2,900여동을 실시하였으며, 각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지원은 파악된 바 없음.
	○상수도의 누수대책과 특히 공사중 부주위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소실에 대한 배상조치 및 대책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공사중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조치사항은 없으며, 누수량 산정은 어려운 실정임.
민방위과	○공익근무요원 배치상황 및 봉급을 국방비에서 지급하지 않는 이유	○도에서부터 복무기관별로 인원이 정해져 내려오며, 청양군 행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로 지급하고 있음.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민방위과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따른 소방장비 보유현황과 애경유지등 관내 화학약품화재시 진화대책	○고층건물 화재진압장비는 보령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약품 진화장비는 농공단지 자체 소화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의용소방대원의 부상시 대책	○재해보상금을 500만원정도 확보하고 있어 약간의 보상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책임은 도조례 등에 의거 지사에게 있다고 봄.
	○업무실적보고시 민방위대원 교육 불참자 136명에 대한 조치내역	○'95. 11. 30 대치면에서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교육미수자 없음.
산 업 과	○농어민 후계자의 전출이나 사망등으로 인한 자금의 회수	○농어민후계자 사망시 부인이나 가족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받은 가족이 상환토록 하고 있고 타지역 전출시 전출한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관리하고 있음.
	○관광농원지구의 '94년도 이전 지정내역과 융자금의 지원규모	○1992년도에 1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취소되었으며, 융자금은 95년도에 개소당 1억 4천만원이 지원됨.
	○연도별 양곡재고에 있어 오래된 '89년산 양곡의 처리계획	○양곡은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89년산 양곡은 미질이 나빠서 소비가 안되고 있으나 '96년도에 가공용으로 소비될 계획임.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산 업 과	○산물벼 수매에 따른 창고 활용계획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의 확대로 산물벼의 수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며, 따라서 농협, 개인창고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며 이에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봄.
	○수해지원에 있어 양어장 설치 신고 여부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여부	○양어장은 신고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는 수해피해복구비도 지원안됨.
	○불법농지전용시 조사 및 조치사항	○화성면 매산리 6,000㎡의 무단형질변경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조치하였음.
	○특용작물 유통 전담기구 설치 의향	○현재 행정기관과 농협에서 유통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산업과 유통특작계에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음.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농산물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소별로 활용도가 차이가 나고 있으나 활용이 부진한 곳은 지도를 해나가겠음.
	○구기자 비가림재배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여부	○비닐하우스이 설치 및 수확기에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지도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음.
	○폐농기계 수집소 설치실적 및 지원상황	○장평면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구입 및 건물에 지원됨.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지역경제과	ㅇ상서래질서확립 시·군교체 단속내역	ㅇ주요소, 택시에 대한 계량기 단속결과임.
	ㅇ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ㅇ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원부에 체납액을 등재하여 이전등록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12월중에 일제 독촉을 실시 수납코자 함.
	ㅇ시장임대료 부과현황 및 임대로 현실화 방안	ㅇ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하고 있으며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음.
	ㅇ농공단지의 미분양지의 분양가	ㅇ미분양지는 그동안의 이자등을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야 됨.
	ㅇ고용촉진훈련실시에 따른 보조 및 자격증 취득 실적, 취업현황,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	ㅇ'95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174명 수료인원중 자격취득 29명, 취업 82명이며,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로는 각 읍·면을 통하여 최대한 홍보하였으나 신청이 없었음.
	ㅇ가스판매업소의 지역제와 정수제를 풀 용의	ㅇ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산 림 과	ㅇ임도시설에 따른 성과 및 공사 시행처	ㅇ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산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함.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산 림 과	○임업협동조합에 설치한 저온저장고의 효과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위탁 저장하고 있음.
	○육림사업추진에 따른 농가 시행여부	○육림사업추진시 농가에 우선 통보하여 산주가 사업신청을 하면 산주가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건 설 과	○지방도 승격 추진상황	○지방도의 승격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5년 주기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있음.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설계용역비를 절감한 실적	○수해복구에 따른 용역설계 등 개략적으로 6억 2천만원 정도 절약된 것으로 판단됨.
	○수해복구사업 334건중 수의계약등 계약종류별 건수	○수의계약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 이하 사업으로 명세를 별도 제출하겠음.
	○하천골재채취 추가배정물량에 대한 배정경위	○각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배정하였음.
	○하천골재채취에 따른 직접비용과 백제권 개발 사업소의 부존량 판단에 따른 대책	○골재채취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지출액은 2억 3,100만원 정도이며, 부존량 조사를 실시하여 1개지구를 추가 확대하여 골재채취코자 함.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건 설 과	ㅇ하천골재채취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편입용지보상내역 및 향후 입찰시 문제점 여부	ㅇ신흥지구 2필지, 왕진지구 1필지가 미보상되었으며, 왕진지구 1필지는 본인이 보상수용을 않고 있으나 입찰에는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봄.
	ㅇ하천편입용지 보상 추진 실적	ㅇ'86년도 당초계획 수립시는 '95년도까지 보상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지가상승등으로 인한 국비지원 축소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음.
	ㅇ칠갑산 도립공원 시설물중 콩밭매는 아낙네상을 주차장등 다른 장소로 옮길 의향	ㅇ검토해 보겠음.
환경보호과	ㅇ축산폐수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ㅇ앞으로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ㅇ광역위생매립장 설치 추진 상황	ㅇ'95년 10월 각 읍·면으로부토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대상지를 답사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50~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봄.
	ㅇ환경민원 접수처리에 있어 무혐의 처분내용	ㅇ정산농공단지 폐수 유출신고 및 칠갑농산의 소음공해 신고시 현지확인결과 무혐의로 된 사항임.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환경보호과	○쓰레기 수거가 매일 실시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수거대책	○연차 계획에 의하여 논롤카, 논롤박스등 각 읍면별로 확보해 나가고 있음.
	○1사 1하천 가꾸기등 하천정화에 군 보유장비를 활용한 환경정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음.
위생환경 사 업 소	○분뇨처리 대행업체의 수거수수료 징수현황	○분뇨처리 수수료는 18ℓ당 151원을 대행업체에서 징수하고 있음.
가정복지과	○충효교실운영에 있어 일부 지원이 안되고 있는 곳에 대한 대책	○보조금 지원이 안되어 일부 몇군데 지원을 못했으나, '96년도에는 지원할 계획임.
	○경노당의 운영실태 파악 여부	○각 읍면별 담당자와 함께 현지확인 실시함.
	○공동묘지관리에 있어 방치된 공동묘지의 수목제거등 관리대책	○공동묘지는 현재 32개소로서 정부시책으로 공설묘지화하고 있으며, 각읍면별로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과 진료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인구 500명 이상인 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진료인원이 아주 적은곳이 있음.
	○보건의료원의 진료비 삭감원인과 타기관에 비하여 삭감액이 많은 원인	○6%정도 삭감되고 있으며,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과잉진료로 삭감되는 경우와 행정착오에 의해 삭감요인이 되고 있음.

소 관	감 사 사 항	감 사 결 과
보건의료원	○고가의료장비등 확충에도 불구하고 군내 의료보호진료시혜자 진료실적에 있어 의료원이 5위에 해당하는 이유	○의료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등 노력하겠음.
	○'95년도 1,080명에 대한 에이즈 검사기관	○의료원에 현재 검사장비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검물을 의뢰하여 검사하였음. '96년도에는 장비구입 코자함.
농촌지도소	○농기계 이동수리요원 확보계획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임.
	○생활개선 순회교육의 파급효과	○비봉면 관산부녀회, 정산부녀회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읍 · 면	○각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각 읍·면별로 '95. 11. 1~12. 30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일소를 위한 일제독려에 임하고 있으며 체납액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환경미화원 활동 및 관리상황	○환경미화원은 현재 청양읍 15, 정산면 3명, 그외 8개면은 각 2명씩으로 총 32명으로 새벽부터 환경미화에 노고가 많음.

◇ 현지확인

소 관	확 인 사 항	확 인 결 과
도 시 과	○청양읍 정수장 시설사업 조경수 식재상황 현지확인	○청양읍 정수장의 향나무외 8종 1,758본의 조경사업실시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사업완료 되었음.
건 설 과	○온직소류지 준설사업 추진상황 현지확인	○남양면 온직소류지 준설사업 추진상황 확인결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땅이 질어저 장비투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결빙이 된 후에 본격적인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아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산 림 과	○무육간벌사업(정산 마치리 현지확인)	○정산면 마치리 무육간벌사업 4.8ha에 대해 확인결과 사업 완료되었음.
	○정산농공단지내 은행나무 식재상황 현지확인.	○정산농공단지내 은행나무등 수목상황 3,740본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착근율 및 성장율이 불량함.
	○덩굴(칡)류 제거사업(장평 화산), 어린나무가꾸기사업(남양 온직) 현지확인	○장평면 화산리 덩굴(칡)류 제거사업 15ha, 남양면 온직리 어린나무가꾸기사업 8ha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사업완료되었음.

◇ 시정 및 요구사항

1. 각종 인쇄물의 자체인쇄 및 저가용지 사용으로 예산절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군정조정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사안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히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적기 발주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특집홍보비는 집행계획과 기준을 세워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문화재 보수는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른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군정소식지 배부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배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청양홍보집 제작시 홍보물의 질을 향상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기 바람.
8.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시정 개선 또는 보완되도록 하기 바람.
9. 군 행정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외연수계획의 수립과 연수결과 행정에 반영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10. 생활민원사업 추진에 있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생활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1. 송방천 복개지의 주차장을 재정비하여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기 바람.

12. 지천 수상공원의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항구적인 복구로 명실상부한 수상공원이 되도록 하기 바람.
13. 공설운동장 설치에 따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매입 또는 교환등으로 소유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4.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융자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5.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시 적정한 목표설정으로 세입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6.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7. 행정재산관리에 있어 임대계약시의 목적을 위배 사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바람.
18. 지목변경요인 발생시 관계부서간 긴밀한 업무처리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9. 생수시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무허가 제품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하기 바람.
20. 관내 병·의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하여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바람.
21.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22. 상수도 운영에 있어 경영합리화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3. 공사중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시설 및 누수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4. 농어민후계자의 선정에 있어 적격자의 선정으로 탈이농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5. 구기자 비가림재배 지원에 따른 확인점검을 철저히하여 목적외 사용에 따른 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6. 폐농기계 수집소 설치운영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하여 전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7. 시장사용료 징수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8. 고용촉진훈련 실시 대상자의 선정 및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적격자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9. 가스판매업소의 지역제 및 정수제를 재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30.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항구적인 복구공사가 되도록 하기 바람.
31. '96년도 이후 하천골재채취에 따른 수입금 배분 및 물량확보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2. 하천골재채취장 진입로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등 사전 조치토록 하기 바람.
33.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축산폐수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34. 농촌지역의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5. 분뇨수거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36. 공동묘지의 잡목제거등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7. 보건진료소의 이용상황을 분석하여 이에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8. 진료비 처리에 따른 행정착오를 최소화하여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39. 진료비 처리에 따른 행정착오를 최소화하여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40. 각 읍면별 '95년말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제출바람.

41. 환경미화원의 노고에 따른 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14. 第9次 本會議

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윤명희 위원장이 보고하였다.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감사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1995년 12월 3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나.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12. 26.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30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00명”을 “20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5. 12. 26.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분뇨처리장 근무자 장려수당이 도내 타시·군과 차이가 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월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5년 12월 30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중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의 지금액중 “8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40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복상교의원, 김용성의원이 선출되었다.